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0가단4490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, 유태훈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4. 주식회사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

담당변호사 이순

변 론 종 결 2022. 1. 11.

판 결 선 고 2022. 2. 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D, E는 연대하여 1,017,134,649원과 그 중 820,300,000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 C, D, E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383,655,198원과 그

중 320,300,000원에 대하여 각 2018. 7. 1.부터 2021. 2. 1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ICN-DAD-ICN 좌석공급 계약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

1)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C'라고만 한다)는 G 한국 총판대리점(GSA)으로서, 2014. 10. 15.
소외 H 주식회사(이하 'H'이라고만 한다)와 'ICN(인천)-DAD(다낭)-ICN(인천) 좌석공급 계약(이하 '이
사건 제1계약'이라고 한다)'을 체결하였다. 위 계약의 내용은 H이 위 항공편의 항공권을 구매하는
것으로, 계약기간 2014. 12. 24.부터 2015. 1. 28.까지로 하며, 항공운임 미입금 및 패널티1) 등
발생시 미수금 상계를 위하여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계약기간 만료시 정산 후 H에
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. 이에 따라 H은 2014. 12. 15. 피고 C에게 보증금
24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2) 피고 C는 2014. 12. 12. 원고와 주계약인 이 사건 제1계약 상 계약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을
위한 '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'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H, 보험기간 2014. 12. 10.부터 2015. 1.
28.까지, 보험가입금액 24,000,000원으로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1보험계약'이라고 한다), 위
보험계약에 대해 피고 D, E 및 피고 주식회사 F(이하 '피고 F'이라고만 한다)이 각 연대보증 하였다.

3) 이후 H은 2015. 1. 28. 주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표대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고, 피고 C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.

4) 이에 H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2015. 12. 3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6. 3. 4. H에게 보험금 청구액 중 피고 C가 주장하는 패널티 금액인 3,7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,3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나. G 화물 판매 대리점 계약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

1) 피고 C는 2015. 8.경 소외 주식회사 I(이하 'I'라고만 한다)와 '국제 항공 화물 판매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계약'이라 한다)'을 체결하였다. 위 계약의 내용은 피고 C가 I에 화물 운송장(AIR WAYBILL)을 공급하고 I는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매월 말 피고 C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며, 계약기간은 2015. 8. 25.부터 2016. 2. 24.까지로 하고, I는 피고 C에게 운임보증금으로 300,000,000원을 지급하며,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 자금을 정산하는 것이었다. I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2015. 8. 25. 및 2015. 8. 26. 피고 C에게 보증금 300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2) 피고 C는 2015. 8. 18. 원고와 주계약인 이 사건 제2계약 상 계약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'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'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I, 보험기간 2015. 8. 25.부터 2016. 2. 24.까지, 보험가입금액 300,000,000원으로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2보험계약'이라 한다),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해 피고 D, E, F이 각 연대보증 하였다.

3) 이후 I는 계약 기간 도중인 2015. 12. 29. 피고 C가 이 사건 제2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환불을 요청하였고, 이에 대해 피고 C는 I에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면서 지급받은 300,000,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, 결국 보증금 상환을 미이행하였다.

4) 이에 I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2015. 12. 31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6. 10. 21. I에 3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G ICN/DAD/ICN 좌석 공급 계약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

1) 피고 C는 G 한국 총판대리점(GSA)으로서, 2014. 6. 2. 소외 J 주식회사(이하 'J'이라고만 한다)와

‘G ICN(인천)-DAD(다낭)-ICN(인천) 노선 좌석 공급 계약(이하 ‘이 사건 제3계약’이라 한다)’을 체결하였다. 위 계약의 내용은 J이 위 항공편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, 계약기간 2014. 7. 16.부터 2014. 9. 6.까지로 하며, 항공운임 미입금 및 패널티 등 발생시 미수금 상계를 위하여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계약기간 만료시 정산 후 J에 잔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. J은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2014. 6. 10. 피고 C에게 보증금 300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2) 피고 C는 2014. 6. 9. 원고와 주계약인 이 사건 제3계약 상 계약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‘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’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J, 보험기간 2014. 6. 5.부터 2014. 9. 6.까지, 보험가입금액 300,000,000원으로 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제3보험계약’이라 한다), 위 보험계약에 대해 피고 D, E가 각 연대보증 하였다.

3) 이후 J은 2014. 9. 6. 이 사건 제3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표대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고, 피고 C에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.

4) 이에 J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2015. 12. 11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6. 3. 10. J에 3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G ICN/HAN V.V 좌석 공급 계약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

1) 피고 C는 G 한국 총판대리점(GSA)으로서, 2014. 11. 11. J과 ‘G ICN(인천)-HAN(하노이) V.V 좌석 공급 계약(이하 ‘이 사건 제4계약’이라 한다)’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제4계약의 내용은 J이 위 항공편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, 계약기간 2014. 11. 1.부터 2015. 3. 15.까지로 하며, 총 계약금액 500,000,000원 및 항공운임 미입금 및 패널티 등 발생시 미수금 상계를 위하여 피고 C에게 보증금 200,000,000원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계약기간 만료시 정산 후 J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. J은 이 사건 제4계약에 따라 2014. 6. 10. 및 2014. 11. 21. 피고에게 보증금 200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2) 피고 C는 2014. 11. 12. 원고와 주계약인 이 사건 제4계약 상 계약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‘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’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J, 보험기간 2014. 11. 12.부터 2015. 3.

15.까지, 보험가입금액 200,000,000원으로 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제4보험계약’이라 한다), 위 보험계약에 대해 피고 D, E가 연대보증 하였다.

3) 이후 J은 2015. 3. 15. 이 사건 제4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표대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고, 피고 C에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.

4) 이에 J은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2015. 12. 11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6. 3. 10. J에 2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, D, E는 연대하여 1,017,134,649원(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,030만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5,459,308원 +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57,895,890원 +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80,087,671원 +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53,391,780원)과 그 중 원금인

820,300,000원에 대하여, 피고 F은 피고 C, D,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83,655,198원(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,030만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5,459,308원 +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및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57,895,890원)과 그 중 원금인 320,300,000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. 2. 16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각 보험계약

약정서 제4조가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공시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률을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, 원고가 상시 공개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로부터 지연손해금 비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약정서 하단에 확인하고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연손해금 적용 비율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들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그 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고 C가 보험금 지급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 C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각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)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된 지연손해금율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연 6% 내지 연 9%로 정해져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도영

1) 일별 계약석 85% 미만 탑승시 좌석당 10만 원의 패널티가 부과된다.

2) 계약석 90% 미판매시 좌석당 10만 원의 패널티가 부과된다.